
2022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

(B, C 유형) 용역 과업지시서

2022. 3.



I 과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중소·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①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 능력 배양, ② 수출연계 지원 강화를 통한 FTA 활용률 제고, ③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

□ 일반사항

- (과업명)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
- (과업기간) 계약일 부터 ~ '22. 11. 30.까지
- (지원대상) 도내 소재 중소·중견기업 56개사
- (추정금액) 금56,000,000원(금오천육백만원) ※ 부가세 포함
- (수행기관) 1개사
- (과업내용) OK FTA 컨설팅 중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및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지원 컨설팅

<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별 지원금액>

(단위 : 만원)

유형	컨설팅 내용		지원MD	지원금액
기초	B	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	2일	100
	C	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컨설팅	2일	100

* 컨설팅 유형별 단가는 산자부 2022년 지역FTA 활용지원센터 지원 사업지침에 따름

II 세부 과업내용

- (지원대상)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·중견기업* 56개사(단, 직전 2년 内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**)
 - OK FTA 컨설팅 지원기업 중 20% 이상(11개사 이상)은 충남FTA 활용지원센터가 지정한 중점업종(자동차부품 및 농·수산식품), 10% 이상(6개사) 이상은 FTA 미활용*** 중소·중견기업 반드시 포함
- * '중소기업 기본법' 제2조,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
- ** 직전 2년(‘20~’21) FTA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되나,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이 추가되거나 또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신규 FTA협정이 추가될 경우 협용
- *** FTA를 처음 활용(원산지증명(확인)서 발급,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)하는 중소·중견기업
- (지원분야) 원산지증명 또는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도내 중소·중견기업 밀착형 기초 컨설팅 지원
 - * 수출기업과 협력업체의 공급망(SCM) 지원이나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지원의 경우 FTA종합지원센터의 종합컨설팅을 통해 진행 가능
- (지원금액)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하되, 기업규모(매출액 기준)에 따라 차등지원
 - 기업의 자기부담금은 컨설팅 지원비용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담

< 컨설팅 비용 기업 부담률(%) >

(단위: 억원)

매출액	50 이하	50 ~ 100 미만	100 ~ 500 미만	500 ~ 1,000 미만	1,000 ~ 1,500 미만	1,500 ~ 대기업 미만
부담률	0%	10%	20%	30%	40%	50%

- 1개사 당 최대 2개 품목(HS 6단위 기준) 내 지원가능하며, 방문 컨설팅의 경우 1일 1기업의 컨설팅만 수행 가능
- 품목에 따라 컨설팅 유형별 지원 일수에서 1일 ~ 2일까지 연장 가능하며, 최대 5일까지 지원 가능
 - (관할지역) 충남 15개 시·군 (계룡, 공주, 금산, 논산, 당진, 보령, 부여, 서산, 서천, 아산, 예산, 천안, 청양, 태안, 홍성)

III 과업수행 지침

-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,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.
- 과업수행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FTA협정 및 관세법, 관세사법,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충실히 따라야 함.
- 본 과업은 발주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과 과업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.
- 과업수행자는 컨설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충남FTA활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수시로 충남FTA활용지원센터와 추진일정 공유 및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고,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
- 종합센터의 전주기 플랫폼에 수행일지와 완료보고서를 업로드 하여야 하며, 수정 ·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수정 · 보완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.

-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
 -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과업수행자는 도내 기업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 방문일수 등을 포함한 컨설팅 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고, 센터에서는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함.
 - 컨설팅수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7월 중 실시하고, 과업수행자는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자료 제출요구, 현장점검, 보완조치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.
 - (중간점검) 지원기업별 컨설팅 수행계획의 진행현황, 배정 및 완료 기업수, 향후 계획 등 보고
 - (최종점검) 컨설팅 결과보고서, 현장 모니터링,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충남FTA활용지원센터에서 1차로 평가하고, 최종평가위원회에서 발표 보고로 진행
- *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관세법인은 차년도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부여, 성과 미흡 과업수행자는 3년간 컨설팅 참가 배제
- 용역비 정산은 전체 추정금액에서 수행기관이 컨설팅을 완료한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회계일정에 따라야 함.
 - 컨설팅 미완료(판정서류 미작성, 원산지확인서 발급 불가 등)시 용역비 정산 불가
 - 과업수행자가 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관련 용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용역사업 완료가 지체되는 경우 지체

상금 발생 가능

-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후일정, 사정변경 등 기타 사유로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.
- 신청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신뢰성 보장하여야 함.
 -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기간 전·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충남FTA활용지원센터 및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. 이의 위반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.

IV 과업수행 성과물

- 과업수행자는 계약종료 시점에 계약기간 동안 충남FTA활용지원 센터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내용을 완료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.
- 완료보고서에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, 일정은 협의 가능함.

〈 과업수행 중간 및 완료보고서 구성 〉

구 분	구성	제출기한	비고
수시보고	월별·컨설턴트별 추진계획 등	-	
중간보고	수행계획 진행정도, 향후 계획 등	22년 7월 중	일정협의
완료보고	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	22년 12월 초	상동

끝.